



사생활 보호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1. 공인의 사생활 보도

▲ 2011-1271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문>

朝鮮日報 2011년 12월 3-4일자 <土日섹션 Why?> B3면 「‘우리들’ 부부, 곁에서 생긴 일」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지난 11월 25일 새벽 미국령 휴양지 괌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KE0112편은 1시간 30분 동안 이륙하지 못했다. 현지 무장 경찰관들이 기내에 들어와 탑승객들을 연행해갔기 때문. 당시 연행된 한국인 탑승객은 우리들병원 원그룹 김수경(62) 회장 일행 4명이었고, 이들을 현지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김 회장의 남편인 이상호(61) 우리들병원 원장이었다. 한때 ‘원앙 부부’로 알려졌으나 지금은 1년 넘게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 부부, 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달 25일 오전 3시쯤 괌 국제공항 면세점 구역의 에르메스 매장 앞. 이 원장과 내연녀 허모(33) 씨, 김 회장 사이에 승강기가 벌어졌다. 이 원장과 허 씨는 일주일 전 괌에 들어와 휴식과 쇼핑을 즐기고 귀국하던 참이었고, 김 회장은 남편이 허 씨와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현장 확인을 위해 수행 비서 등 3명을 데리고 사흘 전 괌에 들어온 터였다.

이 원장은 허 씨에게 다가가는 김 회장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했고, 몸이 기우뚱해진 김 회장은 허씨의 머리 부위를 움켜쥐었다. 허 씨는 김 회장을 밀쳐냈다. 고성(高聲)이 오갔다. 마침 일본행 ANA항공 비행기를 기다리던 여행객과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탑승객이 현장에 몰려들었고 이들 사이에서 ‘까악’ 소리가 나왔다. 구경꾼이 몰려들자 이들의 싸움은 수십초 만에 끝이 났

다. 김 회장은 비행기 탑승 게이트로 발걸음을 옮겼고, 이 원장은 현장에서 ‘폴리스’ ‘폴리스’를 외쳤다. 김 회장 일행 중 이 원장과 친분이 있던 한모 씨가 “가뜩이나 공항 경비가 삼엄한 미국에서 사건을 만들지 말고 한국에 들어가서 조용히 해결하시라”고 설득했으나, 이 원장은 공항경찰대로 향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다. 비행기 출발 예정 시각이 10분이 지연된 새벽 3시 40분쯤 괌 공항경찰대 소속 무장 경찰관 4명이 비행기에 올라왔다. 이들은 남자 승무원의 안내를 받아 김 회장 좌석으로 다가갔다. “당신들은 갱스터(폭력배)이고 (이상호 원장 일행을) 살인하려고 괌에 입국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장 내려라.” 경찰관들은 김 회장 일행을 공항경찰대로 연행했다. 항공사 측에선 화물칸에 실어놓았던 김 회장 일행의 짐을 다시 공항에 내려놓기 시작했고 승객들은 술렁거렸다. 비행기는 새벽 5시 뒤늦게 괌 공항을 이륙했다.

김 회장 일행은 공항경찰대 조사실에서 각각 격리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다른 조사실에선 ‘고소인’ 격인 이 원장과 허 씨가 조사를 받았다.(중략)작년 7월 말 이 원장은 김 회장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의부증이 있는 등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이 김 회장에 게 있다면서 위자료 2억5000만원도 청구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시어머니를 잘 모셨고 의부증은 커녕 오히려 남편의 바람을 나만 모르고 있을 정도로 둔한 부인이었다”면서 “젊은 여자와 별인 불륜을 은폐하려고 먼저 이혼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맞섰다. 이들의 이혼 소송 사건은 1년 5개월째 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김 회장은 “부적절한 현장을 들켜놓고도 공공장소에서 부인을 살인범으로 신고하는 남편이 어디 있느냐”면서 “나 몰래 그 여성과 2007년부터 지금까지 40여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혼 소송을 낸 것은 불륜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근거로 이혼을 요구하는 행위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간 겪은 일을 모두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에 적시한 朝鮮日報의 기사는 이혼소송 중인 부부의 갈등 관계를 전하고 있다. 이 부부는 우리 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는 유명인들로서 공인의 범주에 드는 이들이다. 하지만 비록 이들이 유명인사라 할지라도 이 신문은 그들이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과정과 현재 갈등을 빚는 내막 등 사생활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상대방의 부정한 의도를 탓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반박, 부부 싸움의 현장 상황 등 갈등의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파헤침으로써 관련 개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항(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항(공인의 사생활 보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